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33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2. 6.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30. 접수 제21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0371호로 209,348,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1853호로 항소하여 2022. 5. 2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09,348,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0.부터 2022.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 정본은 2022. 5. 30.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부친 D의 소유로 그가 2020. 1. 11.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다가 2022. 6. 30. 그 상속인인 E 앞으로 3/13, F, C, 피고, G, H 앞으로 각 2/13의 비율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인 2022. 6. 30.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13 지분에 관하여 2022. 6. 23.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항소심 판결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2/13 지분 외에 실질적으로 적극재산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은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22. 5. 30. 원고에게 209,348,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 정본을 수령한 직후인 2022. 6. 23.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부친 D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택순

별지 목록

1. 강원도 강릉시

대 227㎡

말소할 부분: 중 갑구 4번 공유자 지분 13분의7 중 일부 에게 이전받은
지분 13분의2

2. 강원도 강릉시 [도로명주소] 강원도 강릉시

조적조 아스팔드 험글지붕 2층 주택

1층 110.22㎡

2층 82.02㎡

지하 12.6㎡

말소할 부분: 위 중 갑구 3번 공유자 지분 13분의7 중 일부 에게 이전
받은 지분 13분의2

